

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2. 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2. 21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장 유운호)

가. 제안이유

- 정무적 성격을 띤 위촉직 위원들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, 연임제한 규정 삭제 및 위촉대상 범위 확대로 폭넓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시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토록 개정
(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)
-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, 시장의 임기 개시 시점에 위원의 해촉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 (안 제4조제1항 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시정자문위원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2. 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2. 21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전정책과장 신광호)

가. 제안이유

- 2020. 4. 10. 제정된 「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」는 재난 발생 시 화성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시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화성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도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으로 ‘현금’ 추가(안 제5조제3항)
- 시행규칙 위임조례 삭제(현행 제7조 삭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피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시 사용처 제한 등 문제점이 있는 바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2. 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2. 21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과장 김성현)

가. 제안이유

- 「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상 위탁기간(5년)과 「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위탁기간(3년)이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 변경(안 제6조제1항)
→ 기존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
-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 변경(안 제6조제1항)
→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(후단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